TRIVN

트리븐 센텀 1·2단지
정부수입인지 수령 확인서

주택형 : ㎡ ( ) Type	동 호

■ 계약자 정보

성 명		계약 종류	☐ 아파트 ☐ 발코니확장 ☐ 추가선택품목(옵션)
생년월일		연락처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수령 내용(사업주체 부담분)

수령 수입인지금액	※ 상기 금액은 납부대상 인지세액 중 사업주체 부담액(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자 부담액(50%)은 인지세 납부기한까지 계약자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고유번호	-
발급일자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트리븐 센텀」 아파트를 계약함에 있어 체결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 중 사업주체 부담분에 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수령하였으며, 계약자 부담분 인지세는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것을 확인 합니다. 또한, 계약자 부담분 인지세 미납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권전매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분양권 전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 해당 인지세의 납부 기한은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교부되는 상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인지세 미납으로 간주되오니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트리븐 센텀 1·2단지
인지세 납부 확약서

TRIVN

■ 계약자 인적사항

주택형	□ 75 □ 84A □ 84B □ 84C □ 114	동호수	동 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일	

상기 본인은 '트리븐 센텀' 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납부 관련하여 202 년 월 일 까지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할 것을 확약하며, 인지세 미납 및 수입인지 미발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확약 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기재금액에 맞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합니다.

※ 2022.12.31.개정된「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는「인지세법」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1호(2023.12.6. 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부담분까지 대신 납부한 경우 계약자는 그 상당액을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